



보도자료

▶ 보도일시: 2012.1.18(수) 석간

<인터넷 1.18(수) 11:00 이후>

▶ 총 6쪽(참고자료 포함)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❖ 고용보험기획과장 김 종 윤 ❖ 운영지원과장 권 오 일
사무관 오 은 경 사무관 이 승 우

☎ 2110-7204,010-2790-6794

☎ 2110-7454

1.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

- 이채필 장관,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원시장을 찾아 직접 홍보에 나서

□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을 앞두고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.

○ 이 장관은 1.18(수) 오전 11시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.
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 활동의 첫 장소로서 전통시장을 택한 것은

- 시장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자영업자를 만날 수 있고,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.

□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하였다.

○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씨(땅과바다건어물 운영)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고,

- 장관은 윤호중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하면서 가입을 축하하고,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-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국상인연합회(회장 진병호)는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’을 체결하였다.(협약서 별첨)
 - 양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였다.
 -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관련 협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보험 가입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고, 향후 가입 회원수가 많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후속 협약을 체결한 계획이다.
- 이후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관계자들과 함께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
 - 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, 과일·떡 등 시장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가 탄생한 뜻 깊은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
 -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“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”이 되기를 희망하며, “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-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,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, 기준보수(154만원~231만원, 5등급)의 50%를 3~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.
 -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(개업연월일)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
 - 제도 시행일(‘12.1.22)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(‘12.7.21) 가입이 가능하다.

참고 1 행사개요

○ 일시 : '12.1.18(수) 11:00~11:40(40")

* 제도 시행일('12.1.22)은 설연휴기간으로, 연휴 전 행사를 진행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

○ 장소 : 신원시장(서울 관악구 소재)

* 전통시장은 여러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다양한 자영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○ 세부계획(안)

일 정	내 용
11:00~11:05(5')	◆ 도착 후 이동(5')
11:05~11:15(10')	◆ 1호 가입자 가입신청서 접수 ◆ 문패 부착 * 기념촬영
11:15~11:20(5')	◆ 협약식 장소로 이동 * 이동 과정에서 상인과 환담 등
11:20~11:30(10')	◆ 협약식(장관님, 전국상인연합회장) * 기념촬영
11:30~11:40(10')	◆ 시장 가두 홍보(안내띠 착용) * 제도 안내, 리플렛 전달, 전통시장 물품 구매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

고용노동부, 전국상인연합회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각각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한다.

1.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.

가.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,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.

나.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전국상인연합회가 회원사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및 가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2. 전국상인연합회는 회원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.

가.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숍, 교육 및 종합정보지, 전국상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동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나. 고용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정책적 건의를 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.

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·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.

2012년 1월 18일

고용노동부장관

전국상인연합회회장

참고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

□ 가입 방식 : 임의가입

- 자영업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('06~) 할 수 있었으나,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
- *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한꺼번에 가입토록 함

□ 가입 대상

-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~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

□ 기준보수

-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
- * (1등급) 154만원, (2등급) 173만원, (3등급) 192만원, (4등급) 211만원, (5등급) 231만원
 - ▶ (보험료) 선택한 기준보수 × 보험료율
 - ▶ (실업급여) 선택한 기준보수 × 50%

□ 수급요건

- 최소 가입기간 1년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- 적자지속, 매출액 감소,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 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

□ 실업급여 지급 일수(소정급여일수)

-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(피보험기간)에 따라 **90~180일**

구 분	가입 기간(피보험기간)			
	1년 이상 - 3년 미만	3년 이상 - 5년 미만	5년 이상 - 10년 미만	10년 이상
소정급여일수	90일	120일	150일	180일

□ 보험료율

-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0.25%, 실업급여 2%로 정함

<예시> 3등급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
 - 납입보험료는 518,400원(43,200원×12개월), 실업급여는 2,880,000원(960,000×3개월)